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1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관할관청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소진 예상에 따라 번호 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번호판 규격 신설

-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대역 확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0.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60,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행정예고)